

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6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3. 6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3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“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” 개정(2022.12.29.)에 따라 보험 보상범위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

3. 주요내용

- 가. 각 법령 및 조항 사이 띄어쓰기 정비(제1조, 제3조) 및 용어 정비(제8조)
- 나.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상 범위에 자연재난·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신설(제4조)
- 다. “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른 띄어쓰기·용어 정비

4. 검토의견

- 행정안전부 “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” 개정에 따라 ‘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’ 보장내용을 신설하여 시민 수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